

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6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7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0조(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) 조항에 위원의 연임규정을 추가하여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(안 제10조)
 - 운영위원의 연임 규정 추가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기간 : 2020.6.16. ~ 2020.6.26.(1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

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”를 “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서 명		여성보육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여성보육과장 정향미
	팀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팀장 정유정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재희 (790-5399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) ① <u>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0조(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) ① <u>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.
제12조(운영위원회 간사) ①·② (생략)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기타</u>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	제12조(운영위원회 간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, 직업훈련 등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
5.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
6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7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8.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,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
9.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·지원체계 구축

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, 피해 회복 및 자립·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,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
3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4.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,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
5.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

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